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8. 9. 17.(월) 총 6매(본문 2, 참고 4)		
담당 부서 연안계획과		담당 자 • 과장 강정구, 사무관 주민호, 주무관 김 옥 • ☎ (044)200-5260, 5261, 5262		
보 도 일 시		2018년 9월 1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7.(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예방적 연안침식 대응 위한 소통의 장 열린다

- 해수부, 18일 대광해변 침식관리협의회 개최... 전문가, 지역주민 등 모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신안군 대광해변의 연안침식관리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8일(화) ‘침식관리협의회’를 개최한다.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자원인 우리 연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고,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설치가 증가하면서 침식이 심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정도로 훼손이 심각한 경우도 있다.

* 정부가 실시한 2017년도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해변(250개소)의 약55% (138개소)가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3%(7개소) 감소한 수치임

이번에 2회째 협의회가 개최되는 신안군 대광해변은 국내 최대 규모 (길이 6km, 최대 폭 600m)의 해안사구가 발달된 해안이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개발로 사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현재 구역 배후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대광국민관광단지 개발사업: 주차장, 휴게실, 샤워장, 숙박, 계류시설 등 조성(’90년 지정, 면적 약 1.5km)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취지를 살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개발사업 담당자, 사구·연안침식 전문가, 지역 주민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다.

강정구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연안침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 우리 연안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그간 침식된 연안을 복구하는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침식피해가 심각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 6개소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관리해 왔다. 그 중 2개소(꽃지·대광해변)는 2017년부터 침식관리협의회를 시범 운영하여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왔다.

* ('15) 삼척 맹방·울진 봉평·신안 대광해변, ('16) 삼척 원평·울진 금음·태안 꽃지 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구역 내에서 연안침식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증축, 규사·바다모래 채취 및 공유수면·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긴급 시에는 관리구역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대광해변 침식관리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9. 18.(화) 10:00-17:00 / 신안군 임자면사무소
- 주제: 대광해변 침식관리구역 관리방안 논의
- 참석대상: 공무원, 사구·연안침식 전문가, 지역주민, KMI 등 약 30여 명
- 주요내용: 대광해변 침식관리구역 침식실태, 대광해변 이용·개발 현황 및 계획, 종합토론, 현장답사 등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추진 배경 및 경과**

- 해수면 상승, 인공구조물 설치 등 자연적·인공적 요인에 의해 연안침식이 심화·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응 필요성 증대
- 연안정비사업 위주의 사후적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공간 관리를 통한 연안침식 방지를 위해 ‘연안침식관리구역’ 법제화(‘14.8)
-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리구역 6개소* 지정
 - * (‘15.8) 삼척 맹방·울진 봉평·신안 대광 해변, (‘16.8) 삼척 원평·울진 금음·태안 꽃지해변

□ **지정 대상 및 절차**(연안관리법 제20조의2)

- (지정대상)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
 - * 침식 등 피해가 심각한 ‘핵심관리구역’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
- (지정절차) 관련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 협의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

□ **지정 효과**(법 제20조의~제20조의9)

- (행위제한) 건축물·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바다모래 채취 등 임의적 개발행위와 긴급상황 발생 시 출입 제한

공간구분	제한원칙	제한되는 행위
핵심관리구역	원칙적 금지	-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증축 -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 바다모래, 규사, 토석 채취행위 -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 사구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
완충관리구역	필요한 경우 금지	- 상기행위 중 완충관리구역에서 발생시 핵심관리구역의 침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행위

- (정비사업) 관리구역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함

□ **협의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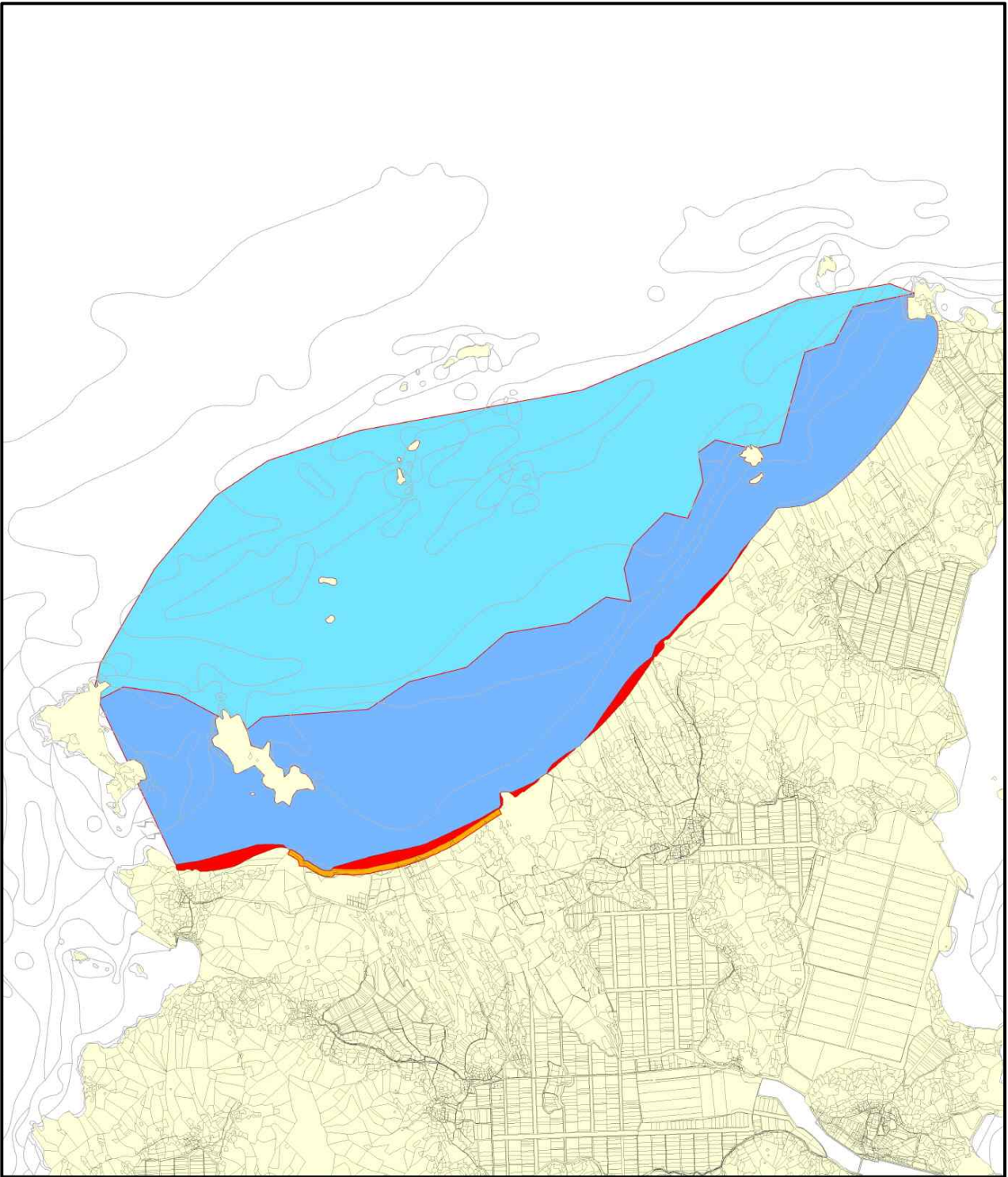
- (목적) 예방적·체계적 연안침식 대응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이해관계자 간 소통·협의 강화 및 지역관심 제고
- (구성) 구역 지정 및 관리 기관(행위제한 위반 감시 등), 침식 유발 행위 관련 기관, 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

부문	세부 내용
구역 지정 및 관리	- 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 - 지방해양수산청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해양수산, 도시계획, 자연재해 관련) -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리수단 연계)
침식 유발	- 항만·어항개발, 골재 채취, 교통·관광시설 설치 추진 기관 (중앙정부, 광역·기초 지자체, 민간기업 등)
지역 주민	- 침식관리구역 지역의 연안 지킴이, 어촌계장, 이장 등
전문가	- 침식모니터링 시행기관 - 침식 관련 기초자료 생산기관 - 해양물리, 연안관리, 도시계획, 재해관리, 생태·환경 분야 전문가

- (논의사항) ① 관리계획(해수부 수립) 이행상황 점검 ② 침식모니터링 현황 및 결과 공유 ③ 연안정비사업 등 침식대응사업 추진 방안 ④ 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자체 관리 현황 ⑤ 침식 유발가능 행위 관리 방안 ⑥ 침식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및 기타 구역관리에 필요한 사항
- (운영) 원칙적으로 우리 부(연안계획과)가 주관하여 반기별로 개최
 - 다만, 지역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자체 주관 또는 수시 개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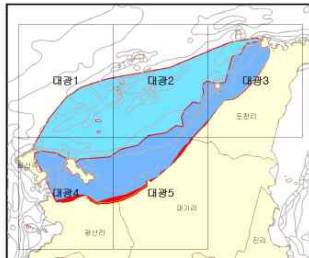
□ **추진현황**

-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해당지역의 침식문제를 공유·개선해 나가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침식관리 분야 최초로 도입(17.5)
- * 연안침식관리구역 6개소 중 2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침식관리협의회를 시범 구성·개최(충남 태안군 꽃지해변 5.29, 전남 신안군 대광해변 5.30)



연안침식관리구역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변 (총괄도)



범례

- 핵심관리구역(육역)
- 완충관리구역(육역)
- 핵심관리구역(해역)
- 완충관리구역(해역)

1 : 15,000



참고 4

대광해변 현황 사진

